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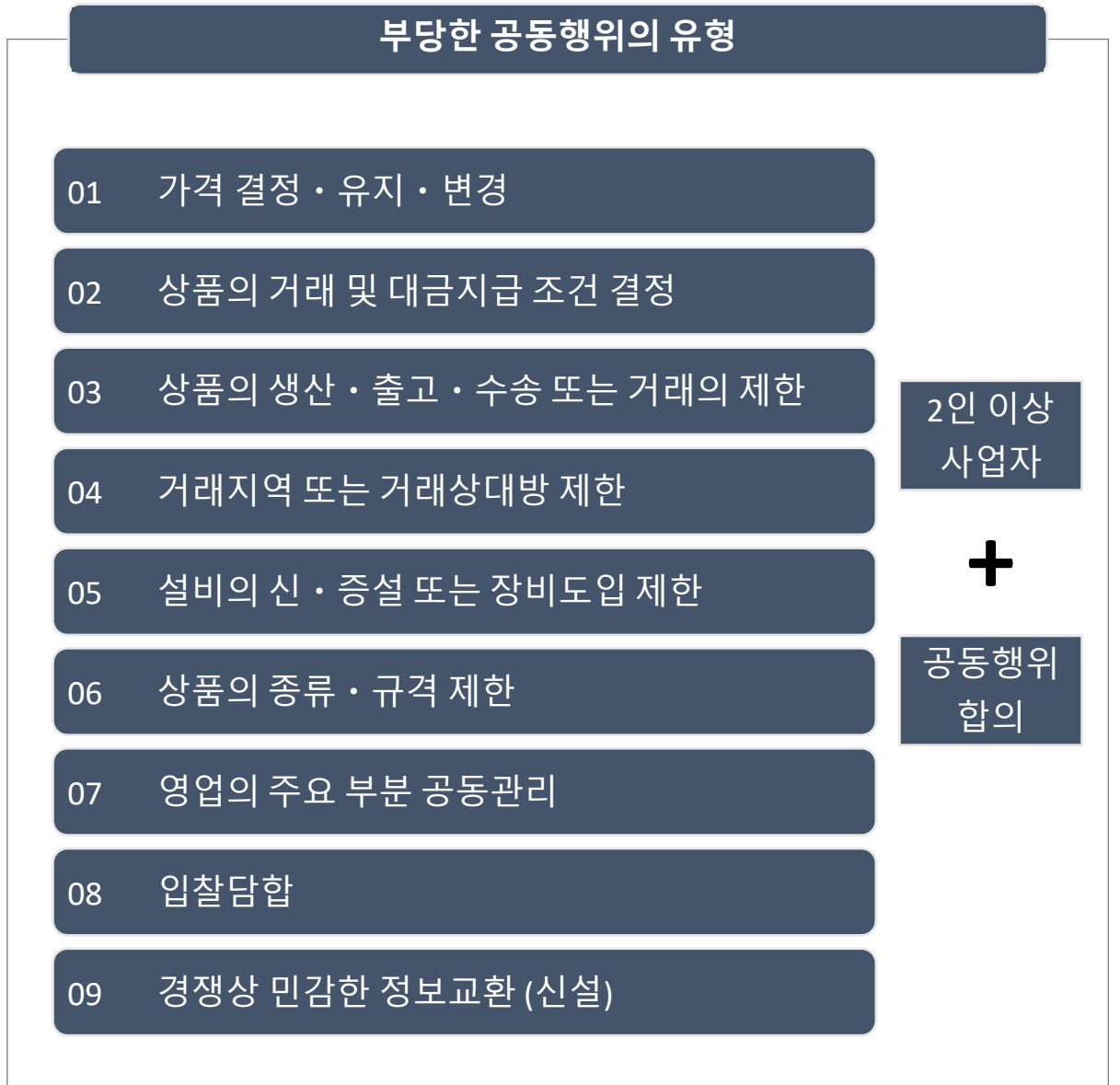
경쟁사 관련 공정거래

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이해

구분	내용
부당 공동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이상의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등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또는 합의하게 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격 결정·유지·변경 ②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⑤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⑥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⑦ 영업의 주요 부분 공동관리 ⑧ 입찰담합 ⑨ 경쟁상 민감한 정보교환 (신설)
법률상 합의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경우 법률상 합의로 추정 (법 제40조 제5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거래분야, 상품·용역 특성,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② 40조 제1항 제1호~8호의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은 때
입찰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 입찰담합 심사지침 (공정위 예규 제392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찰가격담합: 최저/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결정 ②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낙찰예정자, 선정방법 결정 ③ 수의계약 : 특정사업자의 수의계약 결정, 유도 ④ 수주물량결정 : 입찰수주물량과 입찰참가자간 배분결정 ⑤ 경영간섭 : 입찰지도 시 입찰가격, 수주예정자 결정 영향
정보교환 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생산량, 상품·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정보교환 담합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0조 제1호부터 제9호(제9호 후단 제외)까지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격 등이 유사 또는 동일 해지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음 ◆ 추정 복명: 합의 추정 시, 그 합의 추정의 전제 사실에 반하는 정황을 입증하여 추정된 합의를 복명 가능
위반 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20% 이내 (40억 이내)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과거 5년간 벌점누계 5점 초과 ◆ 검찰고발, 입찰방해죄(형법), 손해배상청구 등
면책 및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니언시: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 시 시정조치, 과징금 감면 ◆ 검찰리니언시: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 엠네스티플러스: 다른 담합 관련 정보제공 시 감면 ◆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1.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0조)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1.2.1.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40조 제1항)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①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②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③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④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 2인 이상의 사업자.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는 제외
* 100% 모자회사 관계 (단, 자회사가 실질적 독립 경영 또는 제3자를 포함한 입찰담합 제외)

②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성)

당연 위법의 원칙 (per se illegal)	합리의 원칙 (rule of reas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면 추가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분석 없이 곧바로 위법성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의 존재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합의의 효과가 경쟁제한적이라는 추가적인 입증이 있는 경우만 위법성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제한적 효과만 발생 (경성 공동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 (연성 공동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고정 (인상/인하/유지) • 입찰담합 / 산출량의 결정, 제한 • 거래상대방, 지역 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생산 / 공동마케팅 • 공동연구·개발 • 공동 구매 등

③ 공동행위의 합의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든 사업자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명시적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협정, 협약,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 • 현실적으로 실행하지 않아도 합의의 존재만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 (대판 2001.5.8. 선고 200두 10212, 서울고법 2000.11.16선고 99누6226 포스틸 등 4개 강판제주업체의 운송비 공동행위 결정 건)
묵시적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묵적 양해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자의적 의사표시) 합의도 포함 예) 입찰에서 100억원 이상 가격제출 합의 후 80억원으로 입찰 후 낙찰
합의의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의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직/간접적 의사연락 또는 정보교환 증거, 시장 상황의 결과나 산업구조상 합의 없이 행위의 일치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는 합의 추정됨 *21.12.30.자 법 개정으로 기존 사실상 추정에서 법률상 추정으로 변경

④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행위

- 교사행위 성격을 포함 / 단순 방조 행위는 불포함
- 수직적 공동행위 인정여부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하는 수직적 합의를 규제하는 것
현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적 합의 유형은 불공정거래행위 (배타 조건부 거래, 거래지역/상대방의 제한, 끼워팔기) 및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로 규제 * 현행 공정거래법은 수평적 행위만 규제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합의도 Sherman Act 1조 적용, 수직적 공동행위 인정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기능조약(TFEU*) 제 101조에 수직적 담합행위에도 적용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1.2.2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추정 제도 (법 제40조 제5항)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형상 일치)①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 해당 거래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정황사실)②이 있을 때
 - ✓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필요성)③ 정보를 주고받은 때 (정보교환)④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간의 합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 제40조 제5항에 추정제도를 두고 있다.
-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들 사업자간의 합의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을 지라도 위 제40조 제5항 제1,2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외형상 일치

-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 시점 : 가격 등 경쟁 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 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구매 대체의 정도 : 가격 등 경쟁 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 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합의의 방향성이 같은 경우 :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

② 정황사실(상당한 개연성)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직·간접 의사연락 (예시)

- ㉠ 해당 사업자 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일 통일된 경우

-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수행 시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 (예시)

- ㉠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시)

- ㉠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 ㉡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 ㉢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산업구조상 합의없이 행위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시)

- ㉠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③ 공동행위의 합의

- 정보교환의 방식이나 범위,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 등으로 판단
- 교환 방식 : 폐쇄·개방적인지 여부
- 정보의 내용 : 개별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인지, 산업 전체의 통계적인 것인지 여부, 미래·과거에 대한 것인지 여부

④ 정보교환

-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 교환
- (단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쟁에 큰 경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 교환 미적용)
- 교환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 교환
- 외형상 일치와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 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경쟁사 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 품질이 대체로 동일하고 상호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대체로 14%에 근접하나 회사별로 최대 1.4%p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13.4% ~ 14.8%)
- ㉢ 7개 사업자만 존재하는 카드 서비스 시장에서, 4개사가 2개월의 기간 동안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28.99% ~ 30% 수준으로 최대 1.1%p차이를 두고 인상하였고, 연체이자율은 34% ~ 35% 수준으로 최대 1%p 차이를 두고 인상하였는데, 비록 요율이나 인상 시기의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고객들의 카드사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종래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비상급유 서비스를 4개월에 걸쳐,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 장치 해제 서비스를 6개월 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
- ㉤ 강판 제조업자 3개사가 5년간 10여 회에 걸쳐 강판 가격 변동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된 가격이 거의 유사하였고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최대 2.3%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가격 인상 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 ㉥ 산업 기계용 베어링 제조·판매업자 3개사가 4년에 걸쳐 수회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약간의(0.3%p ~ 8%p 수준)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유사하였고, 가격 인상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 합의추정 복명

- 사업자는 외형상 일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설령 외형상 일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일치와 교환된 정보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즉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합의의 추정을 복명할 수 있다.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 (예시)

-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위법성 판단기준

① 공동행위 위법성 심사기준

- ✓ 경쟁제한성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별도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나, 효율성증대 효과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는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②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분석

㉞ 경성공동행위

- ✓ 경쟁제한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공동행위로 직접적으로 관련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산출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경쟁제한 효과 명백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

직접적인 가격 인상 및 산출량 감소

-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
-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산출량을 결정 혹은 조정
-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할당
-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입찰가격 또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

㉟ 연성공동행위

- ✓ 경쟁제한적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는 행위

경쟁 제한 효과 & 효율성 증대 효과

비교 형량 필요

경쟁제한과 효율성증대 효과 동시 발생

- ㉞ 유형: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공동표준개발
- ㉟ 효율성 증대효과: 자산·지식·경험의 결합 또는 위험의 배분, 중복비용의 감소 등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때로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사업을 수행 가능
- ㊱ 경쟁제한효과: 시장지배력을 유지·창출·증가시켜서 가격상승, 품질·산출량·혁신노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

③ 비교 형량

경쟁 제한 효과 VS 효율성 증대 효과

- ㉞ 효율성 증대 효과가 당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㉟ 공동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에서 경쟁 제한에 따른 피해가 클수록 이를 상쇄하기 위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커야 함

1.3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위반사례

1.3.1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동판매가격 결정 및 유지 (사례)

4개 소형 베어링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결정 건 (2014 국가1530, 의결 제2015-057호)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1998. 1. 1.부터 2011. 8. 25.까지 영업책임자 등 간에 수십 회의 의사연락을 통해 국내 주요 철강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수주물량을 배분하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기본적인 합의 내용은 기존 점유율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① 오리지널 베어링을 수주한 피심인이 보수용 베어링을 우선 수주하고, ② 피심인들이 납품하고 있지 않은 신규 입찰에 대하여는 각각 50%씩 수주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같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非眞意意思表示)로 합의를 한 후 실제 입찰에서 이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본 합의 내용을 전제로 실제 철강용 베어링 입찰 건이 나오면 엔에스케이 코리아와 제이텍트 코리아는 다시 건 별로 수주 형편을 나누어 납품할 물량비율을 배분하고 제출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후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행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공동으로 철강용 베어링의 가격을 결정하고 수요처를 분할하거나 수요처별 물량을 배분을 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심인들이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약 14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철강용 베어링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발급수수료 공동결정 (사례)

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결정 건

(2014 카조 1980, 의결 제2015-028호)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선하증권 등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소량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시장은 국내의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으로 피심인들이 LCL화물의 서류발급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발급비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수요자인 수출업자에게 피해만 초래할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2013년 기준으로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피심인들은 약 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와 같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피심인들이 서류발급비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국내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선하증권 등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소량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2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조건 결정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 '거래조건'이란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 방식, 운송 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이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과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상품·용역 또는 대금·대가의 거래조건(사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사실관계

원고(사단법인 대한손해보험협회 외 10개사 (동양화재해상보험, 신동아화재해상보험, 대한화재해상보험, 그린화재해상보험, 쌍용화재해상보험, 제일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엘지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손해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2000. 11. 1.부터 2001. 3. 1. 사이에, 나머지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2001. 4. 1.부터 2001. 10. 1. 사이에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긴급출동 서비스를 특약상품화하여 유료화 하였다.

대법원 판단

법 제1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2001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이 97.9%에 이르는 점,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1.1%에 이르는 점,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 및 유료화 한 이후에도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등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 1개의 손해보험회사가 단독으로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의 무료 제공을 폐지할 경우 영업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 긴급출동 서비스를 특약상품으로 유료화 한 후 종전 보험계약자의 80%가 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특약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위는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며,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 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위는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3.3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 별로 할당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판매가격, 거래량 및 거래상대방 공동결정 (사례)

4개 반응개시제 제조 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4국카3037, 의결 제2015-015호)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기본합의에 따라서 2013년 1월까지 수시로 영업담당자 간의 회합,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수요처 입찰이 있을 때마다 수요처 별 낙찰자 또는 납품업체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물량을 침범하지 않기 위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견적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상호 교환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야쿠 약조는 피엠씨와 세기, 동성 간의 수요처 및 물량 분할, 가격인상 합의 진행 상황을 피엠씨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으며, 피엠씨가 경쟁사와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을 큰 변동 없이 제출하도록 승인하여 공동행위 지속에 대한 의사를 암묵적으로 표시하였다.

공정위 판단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수요처 분할, 수요처 별 물량 분할이고,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6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반응개시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1.3.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결정 (사례)

5개 석유제품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1시감0341, 의결 제2011-161호)

사실관계

2000년 3월 초 경 피심인 SK, GS, 현대, SO의 본사 소매영업담당임직원은 여의도 소재 일식당에서 개최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서 정유사가 다른 정유사를 원적으로 하는 주유소(이하에서는 이 경우의 정유사, 주유소를 각각 '원적사', '원적주유소'라 한다)를 자기의 거래상대방으로 유치함에 있어 원적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적' 관리를 통하여 주유소 유치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정유사가 원적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적주유소를 유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유치(Counterattack)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2000년 3월 초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서 주유소 확보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적 관리 원칙(정유사의 원적주유소에 대한 기득권 인정 원칙)을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쟁사의 원적주유소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피심인들 간 자기의 원적주유소를 서로 맞 교환하였으며, 맞교환이 어려운 경우 동일 또는 유사수준의 다른 주유소를 교환하는 등 '원적관리 합의'를 실행하였다.

피심인들은 한국석유통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공식적 모임이나 임직원들 간의 비공식적 모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였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석유제품 유통구조가 정유사 주도로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점, 피심인들 이외에 다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고 피심인들의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의 시장집중도도 미미한 점, 상품 품질의 동질성이 높은 점 등은 공동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 판단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에 대한 유치경쟁을 자제함으로써 피심인별 계열 주유소의 점유율을 고착화시키고, 정유사 간 주유소 유치경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주유소의 거래 조건 개선을 차단함으로써 경질유 석유제품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의도나 목적을 보아도 경쟁제한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피심인 SK에너지 주식회사, GS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S-Oil 주식회사는 기존 주유소와 거래를 함에 있어 경쟁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고 있거나 종전에 경쟁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였던 주유소와는 서로 거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되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국내 경질유 석유제품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을 통한 정상적인 정보 수집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직접 혹은 한국석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상호 간에 주유소의 상표표시 변동과 관련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1.3.5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 도입 제한(법 제40조 제1항 제5호)

-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증설 규모를 정하는 행위,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1.3.6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법 제40조 제1항 제6호)

-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상품의 종류·규격제한협정 (사례)

㉞무학 및 대선주조㉞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911부사1658, 의결(약) 제2000-43호)

사실관계

피심인 주식회사 무학은 경영상 비용절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플라스틱박스형 소주에 비하여 제조원가가 많이 드는 종이박스형 소주의 계속 생산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경쟁사의 행동을 의식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결정·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1999.2.9. 무학의 대표이사 최재호와 대선주조의 대표이사 천용주는 부산주류도매업협회 주관한 영남 제주지역 소재 소주제조회사 대표자들과 동 지역 소재 주류도매업협회 회장들의 모임에서 부산주류도매업협회 회장 박석준으로부터 종이박스형소주의 출고(공급)중단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1999.3. 하순경 부산주류도매업협회 사무실에서 위 박석준이 무학의 전무이사 박인목과 대선주조의 이사 정일(鄭逸)에게 재차 종이박스형소주의 공급중단을 요구하므로, 이에 박인목이 정 일에게 1999.4.1.부터 종이박스형소주 공급을 중단하자는 제의에 대하여 정일은 긍정적인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 무학은 1999.4.1.자로 종이박스형 소주의 생산 출고를 중단하였으며, 피심인 대선주조는 1999.4.2.에 있는 임원회의에서 1999.4.7.부터 공급을 중단키로 결정하여 1999.4.7.부터 종이박스형소주의 생산 출고를 중단하고 플라스틱박스형소주만을 생산하였다.

공정위 판단

원칙적으로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은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수급상황, 고객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제공되고 있던 종이박스형 소주 라는 특정 종류의 제품을 피심인들이 상호 의견교환과 의사연락을 통하여 그 생산 출고를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플라스틱박스형소주」만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실행한 행위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종이박스형소주의 생산을 공동으로 중단하여 소주상품의 종류를 제한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 남도지역 소주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7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7호)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이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결정 (사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7개 액화석유가스 통합판매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2독관1053, 의결 제2002-226호)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LPG 판매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고 이 지역 주택과 식당 등에 대하여 LPG를 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정부가 판매공동화시책에 의해 영세판매업자의 통합을 추진하자, 1997. 4월 부터 공동관리기구형태의 '강서가스산업상사'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있다.

1997. 3월경에 강서구의 기존 판매점(총 27개) 중 22개 판매점이 지분소유자로서 7개로 통합하면서 각자 균등지분을 유지한 채 영구히 동업을 하기로 하고, 이익금은 월말 결산하여 균등배당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삼표가스 공동대표 김진설과 공항가스 공동대표 김양현 등의 주도하에 7개 통합판매점 대표 등이 통합판매점 들을 공동관리하기로 합의하고, 본사(강서가스산업상사)는 총괄업무를, 통합판매점은 각기 판매활동을 하는 등의 운영방침을 결정하였다(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분소유자 1인당 5백만원씩을 균등 각출).

공정위 판단

피심인 7개 통합판매점 대표들이 통합 판매점들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하고, 7개 통합판매점을 공동관리하는 본부로서 강서가스산업상사를 설립 및 운영한 행위는, 사업자들이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의 설립·운영행위로 인정된다.

다음의 점들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LPG 판매업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LPG 판매업자 27명 중 22명이 통합됨으로써 이 지역 판매업자의 80%가 참여한 점
- 나. 2002. 3월 기준 피심인들의 판매량(9,274개 용기) 중 공동관리기구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한 비율이 60% 이상에 달하는 점[더 나아가 지정가격보다 용기당(20kg) 500원을 할인판매한 물량 포함시는 (50kg 제외) 약 90%가 지정가격대로 판매한 것으로 분석됨]
- 다. 7개 통합판매점에서 적용한 지정가격 수준이 종전 정부 고시가격체제하에서의 소매점 유통마진 적용시보다 높게 결정된 점
- 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PG 안전공급계약 제도에 의거 체결된 피심인들의 계약체결 건수 비율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에서 48% 이상을 차지한 점 등.

피심인들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업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8. 입찰담합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 낙찰 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 또는 경락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낙찰가격 또는 경락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 여부나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들이 낙찰 또는 경락 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3.9 사업활동제한 또는 정보교환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① 위 1.3.1~1.3.8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법 제40조제1항 제9호 전단)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이 위 ① ~ ⑧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사례)

속초지역 18개 주유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2공동0741, 의결 제2002-106호)

사실관계

강원도 속초지역에 소재하는 18개 주유소의 대표(또는 소장)들은 2001.12월 중순경에 모임 또는 의사연락 등을 통해 휘발유 판매가격을 2001.12.14. ~ 12.17. 사이에 공동으로 인상한 사실이 있다. 즉, 장원주유소 등 11개 주유소의 대표(또는 소장)들은 2001.12.10.경 속초시청 근처의 음식점에서 휘발유 가격 인상 등을 논의하고 이에 따라 휘발유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있으며, 뉴설악주유소 등 7개 주유소의 대표(또는 소장)들은 위 모임에 참석한 동해유업주유소 대표 등으로부터 휘발유 가격 인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권유 받고 이에 동조하여 휘발유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1. 합의의 존재

피심인들이 사전에 모임 또는 의사연락 등을 통해 휘발유 판매가 격인상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이에 따라 휘발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휘발유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경쟁체제를 통해 형성되어야 할 휘발유 판매가격을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직접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로서 하여금 경쟁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함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 또한, 피심인들은 강원도 속초지역의 28개 주유소 중 64%에 해당하는 18개 주유소로서 속초지역 휘발유판매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심인들이 휘발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강원도 속초지역 휘발유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휘발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함으로써 강원도 속초지역 휘발유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교환 담합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후단)

-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 받는, 정보교환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재고량 또는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관련 정보(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한다.
-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의 정보가 중간 매개자를 거쳐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지만 하는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개적인 공표 또는 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또는 공개매체의 성격 및 이용자의 범위, 접근 비용의 유무·수준 및 경제주체 별 차등 여부, 공표 또는 공개의 양태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위의 항목에 불구하고, 사업자 간 비공개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한 후 그 정보를 사후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한 경우는 정보교환 행위로 본다.

1.4 입찰담합 유형과 법 위반행위 및 위반사례

-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경쟁사업자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사업자단체 또는 제3의 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 행위가 범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범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에서 입찰담합의 내용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의 **반대 또는 불참여의 의사가 의사록에 기재되는 등의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큼.** 따라서 **내용을 공표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경쟁사업자간의 모임에는 가급적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모임에서 가격 등에 관한 협의 등이 이루어져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퇴석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거나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4.1 입찰가격담합

- 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또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등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행위를 말함.

1.4.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1.4.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 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1.4.4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1.4.5 경영간섭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낙찰 예정자 사전결정 (사례)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 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5카총3753, 의결 제2016-161호)

사실관계

건설사는 2005 년 ~ 2006 년(1 차-5 건), 2007 년(2 차-3 건), 2009 년(3 차-4 건) 등 총 3 차에 걸쳐 총 12 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합의함.** 이들은 2012 년 말까지 각 공사 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도록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 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각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 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보다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들러리사들에게 전자 파일 형태로 전달함.**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 내역서 그대로 투찰하여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되었다.

13 개 건설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시공 실적을 가진 업체들 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출혈 경쟁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하게 되었다.

3 개의 합의는 건설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시장에서 출혈 경쟁없이 물량을 고르게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중도에 단절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합의이고, 각 합의는 긴밀하게 연결됨. 발주처의 입찰 참가 자격 완화로 입찰 참가 가능 업체가 계속 증가하였음에도 입찰 참가 자격을 신규로 얻은 업체를 포함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12 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 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 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한다.

1.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제 3 호(물량 배분) 및 제 8 호(입찰 담합)
2.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및 검찰 고발
 - 시정명령 :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13 개 업체)
 - 과징금 : 총 3,516 억 원(10 개 업체)

설계의 방법 사전결정 (사례)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관련 2개 건설사 및 2개 설계용역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실관계

A건설사와 B건설사는 수자원공사가 2009. 7. 10. 발주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 9월 말경부터 같은 해 10. 8일경까지 기본설계 준비 상황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기본설계에 대한 양사 합의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양사는 2009. 7. 10.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 9월말 경부터 같은 해 10. 8일경까지 기본설계 준비 상황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 중 구체적으로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 등에 대하여 두 차례의 모임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합의하였다.

설계의 방법 사전결정 (사례)

양사가 구체적으로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 등에 대하여 두 차례의 모임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합의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은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및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판단

A건설사와 B건설사는 각 사가 대표로 구성된 수급공동체만이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되어 본 입찰에서 두 회사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등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를 크게 야기하였으므로 과징금 총 95억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단, 설계사인 삼안과 도화는 삼성물산, 대우건설에 대하여 각각 중속적 지위에 있어 시정명령만 부과한다.

□ 공정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제 8호(입찰담합) 및 시행령 제33조 제 2호, 제3호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13 개 업체)

- 과징금: 총 95 억 원 (2개 업체)

▶ 허용되는 행위(Do) & 금지/법 위반 가능성 높은 행위(Don't)

유형	허용되는 행위	금지 또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입찰가격 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공사 관련 독자적인 동종업계 영업정보수집 발주처 요청 하 설계공사금액 공동조사 안전시공 및 건설원가 인하목적 신공법, 신기술 정보교환, 사례수집 중소기업단체의 공사금액 계산향상목적 표준계산방법, 작업량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최저입찰가격 결정 입찰가격 협의, 관련정보 교환, 제공으로 입찰가격 결정 경쟁업체의 산출내역서 복사, 대리작성 입찰 참여 예정금액보다 높은 입찰가 제출로 고의 유찰

유형	허용되는 행위	금지 또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주 지명 받은 사업자의 자진 입찰불참 발주처 저예산 등 수익성 사유로 자진 입찰불참 수행능력부족 또는 기술경쟁력 부재로 입찰불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찰 예정자 사전 결정 후 협조 입찰 연고권 주장 업체간 특정범위 공사 교대수주, 입찰서 대리작성 등 특정업체 낙찰 협조 전문업체에 타 업체의 입찰서 작성의뢰 후 경쟁사에 배분 낙찰예정자 결정 후, 관련 경쟁사에게 통지 및 협조 요구 낙찰배제자의 낙찰자에게 사례금, 특별회비, 부과금 징수행위
수의계약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상승으로 발주처 예산범위 입찰불가로 불참결정 재입찰 시, 당사 수주여건 불가로 불참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계약 유도합의 목적 높은가격 제출로 유찰, 의도적 입찰거부 들러리 입찰로 수의계약 유도 (경쟁업체 참여배제 목적) 입찰관련 부당/불량업자로 특정업체를 발주처에 통보/대외공표로 입찰방해 후 수의계약유도
수주물량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건협 등 발주처 전반동향 (실적 및 전망 등) 파악 후 정리, 공포 법근거, 발주처 요구, 기술적 필요로 공동 수주 (사업주 승인 하 JV 또는 Consortium 등 입찰 경쟁력 강화 목적 공동협력 및 역무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으로 수주물량 또는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 결정 수주물량 배분에 비협조업체 입찰참가 방해 및 불이익 제공 단독 수행 불가 시, 일부물량에 응찰해 타 사업자와 공동수주 유도
경영간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 입찰참여자에 대한 입찰제도 운영관련 단순요망, 의견표명 부실공사방지위한 공동 품질보증 및 안전시공 목적으로 회합, 의견.자료교환 (기술분야의 경쟁 촉진·확산) 입찰업체에 발주자 기술관계 등 입찰관련 일반사항 설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 공동 판매 시 저가입찰자 또는 임의 참여자에 판매물량 제한, 불리한 조건판매 입찰가격 목표부여 또는 수주예정자 결정 위한 입찰여부 사전통지 요청 입찰자의 수주물량 일부를 특정업체에 하도분할조건 또는 특정업체 자재구입조건 제한 낙찰예정자의 계약금 일부 기부금, 특별회비 납부로 공동사용, 배분행위

1.5 정보교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1.5.1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합의 금지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는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시키거나 기술·제품 개발을 촉진하며 성공사례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격결정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은 사실상 가격의 공동인상 등을 초래하거나, 경쟁사 간 경쟁 압력의 약화를 야기하는 등의 **경쟁제한적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규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그 합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40조 제5항 제2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았음'을 근거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법성 판단기준

- 법 제40조 제1항 제9호(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합의 금지)의 위법성 성립요건은 ① 정보교환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그 합의의 실행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③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한다.

① 정보교환 합의

- ✓ 정보교환 합의란 사업자 간 법 제40조제1항 제9호 본문 및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정보, 즉 **가격, 생산량, 상품·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을 교환하기로 하는 상호 간의 의사 합의(meeting of mind)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는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도 포함**한다.
- ✓ 묵시·암묵적 합의는 정보교환이 해당 정보와 관련된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주체 간,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중요한 의사결정 전 이루어지거나, 교환된 정보를 각자 활용하는 행태로 나타난다.

명시적 합의 (예시)

- ㉠ 경쟁사들이 자신이 대리점 들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출고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작성한 경우
- ㉡ 경쟁사들이 사업자단체를 결성하고, 이 단체를 통해 상호 간의 시장점유율, 제품별 판매량 및 판매시기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공동 작성한 경우
- ㉢ 경쟁사들이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구두 합의한 경우

묵시적·암묵적 합의 (예시)

- ㉣ 경쟁사들이 6년간 가격, 판매량, 출고량, 재고량 등을 대표자급 회의, 임원급 회의, 실무자급 회의 등 다양한 직급이 각각 참여한 회의(총 회의 수는 약 270회)를 통해 교환하고 이를 각자의 가격 결정에 반영해 온 경우
- ㉤ 경쟁사들이 10년간 300회 가량 가격 인상안 등을 교환해왔는데, 특히 가격인상 내부 품의 시점 직전에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그 품의에 경쟁사들의 가격인상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 시장점유율 상위 기업들이 매월 말 가격정보를 경쟁사들에게 통지하면, 이를 통보 받은 경쟁사들이 해당 가격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관행이 5년 가량 지속되어 온 경우
- ㉦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별 원가, 재고량을 정리하여 각 구성사업자에게 공유하는 관행이 개별 사업자들의 반대 없이 7여 년간 지속되어온 경우

묵시적·암묵적 합의가 없는 것 (예시)

- ㉧ 경쟁사 간 정보교환이 있긴 하였으나, 단발성이고 불규칙 하였고, 그러한 정보가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별도의 정황증거가 없는 경우
- ㉨ 교환대상 정보와 관련된 경영상의 의사결정 권한 없는 직원 간 정보교환 행위가 있었으나, 해당 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 ㉩ 경쟁사가 보내온 가격 정보 관련 메일을 수신하자마자 더 이상 관련 메일을 보내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실제로도 이후 그러한 메일이 오지 아니한 경우
- ㉪ 사업자단체의 판매량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타 구성사업자에게는 공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정보 제공에 응하였으나, 사업자단체가 해당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판매량 정보를 타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유하는 한편, 타 사업자들의 정보를 임의로 해당 사업자에게도 송부한 경우

② 정보교환 합의 중지

- ✓ 정보 수신 거부의를 표명하였거나 경쟁사업자의 정보 제공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사업자는 당해 행위의 시점부터는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수신 거부의를 표면적으로만 표명하고 여전히 계속 정보를 제공받는 등 수신 거부 의사 표명과 다른 행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한편, 정보교환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는 애초에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정보교환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의 평가 (경쟁제한성)

- ✓ 정보교환의 경쟁제한효과는 시장상황, 시장의 구조 및 상품의 특성, 행위자들의 시장 점유율, 교환된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 행위의 양태, 정보교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시장상황

- ① 정보교환 이후 가격 등 경쟁변수가 유사하게 움직이거나, 경쟁 압력의 감소 등이 나타난 경우
- ② 정보교환 이후 그 하락 폭이 둔화되거나, 시장점유율의 변동폭이 작아지는 등의 경우
- ③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등 다른 경제 변수의 변동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

시장구조 및 상품의 특성

- ① 시장의 집중도, 안정성, 상품의 동질성 등을 종합적 고려
- ② 시장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즉 독과점 정도가 높을수록, 시장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즉 수요·공급의 변동이 적거나 사업자들의 진입·퇴장이 어려울수록, 관련 상품의 동질성이 높아 경쟁에 필요한 정보의 복잡성이 낮을수록

행위자들의 시장점유율

- ① 합의한 사업자의 점유율의 합계가 높을수록, (20% 이하인 경우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 제외)

교환된 정보의 특성

- ① 정보의 시제, 공개성, 개별성 등을 종합적 고려.
- ② 교환되는 정보가 현재 또는 미래의 정보일 경우, 시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공개 정보 또는 비밀정보가 교환될 경우, 상품가격, 생산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개별 사업자 별로 교환될 경우
- ※ 공개 정보 여부를 판단기준: 정보가 공개된 매체의 성격 및 이용자의 범위, 접근 비용의 유무·수준 및 경제주체 별 차등 여부, 공표 또는 공개의 양태 및 의도 등을 종합적 고려

정보교환 행위의 양태

- ① 정보교환의 기간, 교환 빈도, 교환 주체, 교환 시점 등을 종합적 고려
- ② 정보교환의 기간이 길수록, 교환 빈도가 높을수록, 주체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직원이거나, 실무자-중간관리자-고위급 등 다양한 직급에서 각각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교환의 시점이 가격 등의 의사결정 직전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 높다.
- ※ 빈도 판단기준: 관련 시장에서의 거래 주기, 가격 변동의 주기 등 함께 고려. 계약갱신이나 가격 변동이 빈번한 시장이라면 정보교환의 절대적 횟수도 많아야 빈번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교환의 횟수가 적더라도 빈번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정보교환의 목적

- ① 가격 인상, 생산량 축소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합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예시)

- ㉠ 대체로 균질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도시의 모든 호텔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가격 인상계획, 객실 판매량 추이 등의 정보를 취합한 후 이를 별도 가공하지 않고 회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고, 공유시점으로부터 호텔 간 투숙객 점유율이 안정화 되기 시작한 경우
- ㉡ 시장 내 총 사업자가 10개사에 불과한 과점시장에서 9개 사업자가 공급처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원자재를 구매하는 가격을 공동으로 하향 안정화 시킬 목적으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구매가격 관련 정보들을 6년간 160회 가량 교환한 후,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애초에 공개된 정보를 교환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행태를 보인 반면, 실제로 각 사들의 원자재 구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된 경우
- ㉢ 소수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수요 비탄력적인 농기계시장에서 합계 점유율 72%에 달하는 5개 사업자가 9년간 110회 가량 담당본부장급 회의를 통해 판매량, 재고량, 출고량, 향후 생산계획을 공유해왔고, 특히 분기별 가격결정 시점 전에는 가격 인상계획을 집중 교환해 왔는데, 그 결과 매년 농기계 가격이 2~9% 씩 인상되어 온 경우

경쟁제한성이 낮은 경우 (예시)

- ㉠ A정유사 직원이 B정유사 직원에게 최근 1주일 간 특정지역의 B정유사 소속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 평균치를 전화로 문의하고 B정유사가 이를 제공한 경우
- ㉡ 일일 수급 변동, 가격변동이 매우 크고 지역 간 수급여건 편차가 큰 농산물 시장에서, A사업자가 타 지역의 B사업자에게 지난 한달 간 야채의 판매가격을 문의하고 B사업자가 이에 답한 경우
- ㉢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과거 1년간의 가격, 판매량을 취합하고 이를 집계화하여 대국민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개별 회원사들이 이를 통해 공식적인 업계 동향을 인지하게 된 경우
- ㉣ 제조위탁을 하려는 사업자가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복수의 사업자들로부터 연간 가능 생산량, 생산원가, 원자재 재고량 등을 제출 받는 경우

④ 정보교환 합의의 효율성 증대 효과

- ✓ 부당한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정보교환 합의라 하더라도, ㉠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율성 증대효과 창출에 정보교환 합의가 필수적이며,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큰 경우 해당 정보교환 합의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예시)

- ㉠ 사업자단체가 주기적으로 회원사들의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집계한 보고서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발간하여, 회원사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일반 소비자들도 업계 동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 경쟁사들이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은 공동 제품개발, 기술개발, 제품 표준규격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가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 ㉢ 사업자들이 판촉 목적으로 사은품 제공, 가격 인하 등의 공동마케팅을 하면서, 판촉 성과 분석을 위해 판매량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 ㉣ 중소기업들이 원가정보 등의 교환이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효과가 명백한 경우
- ㉤ 관련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가 공동대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가 교환되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1.5.2 정보교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추정 (법 제40조 제5항 제2호)

- 입찰담합 등 개정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 일정요건* 하에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정요건** : ①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9호(제9호 후단 제외)까지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격 등이 유사 또는 동일 해지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어야 하고, ②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 단, ③ 합의가 추정되더라도 사업자는 그 합의 추정의 전제 사실에 반하는 정황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정된 합의를 복멸**할 수 있다.

법개정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환의 순기능(경쟁촉진, 사업효율성 증대, 소비자 후생기여 등)을 인정하면서도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역시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공정위). 우리나라 법원은 법문의 해석상 '정보교환'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담합 '합의'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에 외국 법집행 동향 등을 고려하여 법개정에 이룸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환을 포함해 경쟁을 해치는 모든 합의 금지(Sherman Act 제1조), 합의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담합 조장행위를 했다는 등의 추가요인이 • 있다면 담합 인정됨 (2001년 엑손 등 14개 정유사들이 관리/전문/기술직 직원의 임금정보를 교환해 임금을 적게 준 사건 등)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나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협력하는 수준의 "동조적 행위"까지 담합 인정 (바나나 수입업체가 가격공표 전날 전화로 각 사에 가격정보를 나눈 것 자체가 "경쟁을 해칠 목적"이 있다며 위법성 인정함)

- "정보교환"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 다만,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하는 경우,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 아님

▶ 위법성 판단기준

- ① 외형상 일치 판단기준: 다음을 종합적 고려 판단
 - ✓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 구매대체의 정도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예: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
 - ※ 가격 등 경쟁 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인정

외형상 일치로 볼 수 있는 것 (예시)

- ㉠ 경쟁사 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 품질이 대체로 동일하고 상호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대체로 14%에 근접하거나 회사별로 최대 1.4%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 (13.4% ~ 14.8%)
- ㉢ 7개 사업자만 존재하는 카드 서비스 시장에서, 4개사가 2개월의 기간 동안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28.99% ~ 30% 수준으로 최대 1.1% 차이를 두고 인상하였고, 연체이자율은 34% ~ 35% 수준으로 최대 1% 차이를 두고 인상하였는데, 비록 요율이나 인상 시기의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고객들의 카드사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종래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 견인, 비상급유 서비스를 4개월에 걸쳐,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6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
- ㉤ 강판 제조업자 3개사가 5년간 10여 회에 걸쳐 강판 가격 변동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된 가격이 거의 유사하였고,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최대 2.3%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가격 인상 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 ㉥ 산업 기계용 베어링 제조 · 판매업자가 3개사가 4년에 걸쳐 수회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약간의 (0.3% ~ 8% 수준)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유사하였고, 가격 인상 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②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여부 판단기준

- ✓ 정보의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 ※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가 교환된 경우 (X)
- ✓ 정보가 교환된 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 ✓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필요한 정보의 교환 (예시)

- ㉠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 · 재고 · 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된 경우
- ㉡ 가격인상 결정 시점에 임박하여 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 가격인상계획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이 되었고, 각 회사들이 제시한 가격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아닌 것 (예시)

- ㉠ 경쟁변수가 아닌 일상적 정보(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최신 상품 트렌드 분석자료 등). 단순 경영목표치(목표 성장률, 목표 매출액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 외형일치가 나타난 경쟁변수와 교환된 경쟁변수 정보 간 상관관계가 약한 경우 (예: 가격의 외형상 일치가 있었는데, 실제로 교환된 정보는 대금지급정보인 경우)

③ 합의 추정의 복명 사유

- ✓ 사업자는 외형상 일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설령 외형상 일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일치와 교환된 정보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즉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합의의 추정을 복명할 수 있다.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 (예시)

-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나는 경우
- ㉡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1.6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법 제40조 제2항)

-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 연구·기술개발
 - 거래조건의 합리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 실제, 공정위에서 공동행위를 인가한 예는 많지 않다. 레미콘업계가 신청한 원재료 공동구매, 영업의 공동수행,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중에서 공동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에 관한 공동행위를 인가한 사례가 있다.

1.7 위반 시 제재

1.7.1 담합 관련 법 제재 체계



1.7.2 시정조치 (법 제42조, 제52조)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담합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7.3 과징금 (법 제43조, 제53조)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하다.
- 관련매출액이란 법 위반사업자가 위반 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13조)
-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시행령 50조). 구체적으로는, ①낙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②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③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금액(또는 응찰금액)으로 본다.

1.7.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담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 공정위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위의 정도, 횡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
- 과거 5년간의 기간산정은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으로 역산하되 초일을 산입.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 벌점

구분	경고(서면)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벌점점수	0.25	0.5	1.0	2.0	2.5	3.0

※ 1개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최상위 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

1.7.5 검찰고발 (법 129조)

- 공정위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 고발할 수 있다.

1.7.6 입찰 방해죄 (형법 제315조) *입찰담합

-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입찰담합은 입찰담합에 대한 합의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반면, 형법상의 경매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경매 또는 입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1.7.7 건설법 입찰방해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입찰담합

-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공정을 해치는 건설업자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형법 제315조의 특별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8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법 109조, 민법 760조)

- 발주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반한 경우 민법 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1.8 면책 및 보상제도 (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

1.8.1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 리니언시 제도(Leniency)

-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 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분		필요적 감면	내용
공정위 조사 시작 전	최초 신고자	과징금 : 면제 시정조치 : 면제	•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 의 자 •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
	두 번째 신고자	과징금 : 50% 감경 시정조치 : 감경	• 입증 증거를 제공한 두 번째 자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초 조사협조자	과징금 : 면제 시정조치 : 면제	•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 의 자 •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
	두 번째 조사협조자	과징금 : 50% 감경 시정조치 : 감경가능	• 입증 증거를 제공한 두 번째 자

▶ 검찰 리니언시

-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적용 대상 범죄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하나, 검찰은 담합을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관련자들 간에 은밀히 공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고발 이전이라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12월에 형벌감면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150호]

구분	내용
근거 법령	▪ 형법 315조, 건설산업기본법 315조, 대검찰청 예규 1150호
대상 행위	▪ 경성담합(Hardcore Cartel), 형법 입찰방해, ▪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담합
신청 자격	▪ 사업자 또는 개인(전현직 임원)
신청 절차	▪ 대검 반부패강력부 접수
판단 기준	▪ 담합 입증자료 제출 ▪ 성실협조 : 검찰수사, 형사재판(법정출석 포함) ▪ 담합중단, 강요여부, 반복여부 등 판단
감면 효과	▪ 1순위: 기소면제 (대검예규 10조 1항) ▪ 2순위: 1/2감경구형(동조2항)
비밀 유지	▪ 형사재판확정 이전에 검찰 동의없이 제3자에 누설할 경우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간주

-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경우 검찰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으나, 다른 경쟁업체가 검찰리니언시를 신청할 경우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중소기업부, 조달청, 감사원 등 제3기관의 검찰고발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검찰고발의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담합 사실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회사 및 관련 임직원은 검찰 리니언시를 신청해야 검찰 강제수사 및 기소면제(또는 1/2감경구형)의 형사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암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

- Amnesty Plus 제도는 진행중인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감면을 받는 제도이다.

1.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 범위 내 감경
2.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 : 30% 감경
3.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감경
4.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1.8.2 신고 포상금 제도 (법 제80조 제2~3항)

-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 8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신고 건이 있는 경우 증거 관련 서류,파일, 녹취록 (담합 합의서,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1조~제 25조 2항에 의해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으로 보호된다.

1.8.3 신고제보 제도

- DL그룹은 소속회사 홈페이지에 신고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및 외부자의 담합 익명제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내 외부 고발자 보호규정에 따라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제보내용은 자율준수관리자에 보고 후 조사 및 시정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후 보완하고 있습니다.
- 제보처 : (주) 대림
 - 전화 02-2136-8888
 - 이메일 jebo@daelim.co.kr
 - 우편 (0318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디타워 돈의문 23층. (주)대림 CP팀
- DL그룹 계열회사 제보처
 - 편람 'IX. 제보시스템' 참조

2. 담합 금지 가이드라인

2.1 담합 금지 가이드라인

2.1.1 담합에 대한 이사의 책임 확대 및 담합 규제 강화

- 대표이사,이사의 감시 의무 책임인정 판결 및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행위의 담합 규제 강화로 담합 금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 및 실효적 운영은 기업생존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음. 이와 더불어 '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담합 위반 시 과징금이 2배로 상향 되었고, 담합유형으로 정보교환행위가 신설되었으며, 법률상 추정 요건이 구체화되어 담합에 대한 법적 의무 및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현업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수행 시 담합 발생에 대해 원천적으로 금지 및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① 대표이사/이사 감시 의무 책임 확대 (상법)

- 담합행위 직접 지시 및 보고 없이 감시 의무 위반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확대 인정 (대판 2021. 11. 11. 판결 2017다222368 판결, 상법 399조 1항)
 - 실질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적극적 감시활동 이행 필요
- 담합행위 인지 및 의심 가능여부 관계없이 일반 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 손해배상책임 확대 인정 (서울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상법 393조 2, 4항)
 - 정보보고, 내부통제시스템 작동에 대한 감시 의무는 이사 뿐만 아니라 일반이사까지 확장 인정

②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제 강화 (2021년 개정 공정거래법)

- 과징금 강화 (2배 상향) : 법 위반 매출액의 20% (계약금액 이내)
- 담합유형으로 정보교환행위 추가 : 가격, 생산량, 원가, 거래조건 등 정보 교환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 법률상 추정 요건 구체화 (법 제40조 제5항 제2호) : 외형상 일치, 정보교환
 - * 경쟁사 정보교환 통제 필요 (민감정보 교환 금지, 정보 자료출처 명기, 기록 보존 등)
- 영업비밀 자료 제출 명령 등 :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업에 자료제출의무 부과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거부 불가)
 - * 영업비밀문서의 생성부터 리스크 관리 철저

③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2023년 공정위 정책방향 中)

-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 근절 :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 담합행위 중점조사
* 중간재 : 건설분야 원부자재, 산업용 부품·소재·장비 등
-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발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담합 관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하고 공정위가 입찰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

<담합행위 주요 감시대상 분야>

민 생 ▶에너지, 가정용품, 통신장비, APT 유지보수 등
중간재 ▶건설분야 원부자재, 산업용 부품·소재·장비 등
플랫폼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사업활동 방해 등

[참조]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2.1.2 업계모임, 경쟁사 면담 및 정보교환 원칙

① 업계모임, 경쟁사 면담 및 정보교환 원칙

- 비즈니스 수행 시 동종업계, 경쟁사 모임, 면담 및 경쟁상 민감한 정보교환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 즉, 가격, 입찰가, 입찰수량, 원가, 거래 및 입찰 조건 등의 정보를 제외한 통상적인 영업활동 관련 일반적인 영업정보 교환은 가능하다. (영업활동 중 정보교환 행위는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어 가능하지만,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 모임, 면담 참석 시 성격과 내용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P담당 부서에 사전질의 및 자문**을 받아 확인 후에 참석여부를 결정하고 참석한다.
- 모임, 면담 참석 시 담합관련 정보교환 및 의사의 합치 등 범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자리에서 반대의를 명확히 표시 하고 그 장소를 이탈하여야 하며, 즉시 CP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
- 정보교환 또한 경쟁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관련 정보교환 중지 의사를 표시하는 메일, SNS 메시지 등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정보교환을 중지하고 본부 CP담당부서와 협의한다.

② 건설협회 등 제3자를 매개체로 하는 정보교환

- 건설협회 등 당사가 소속한 사업자단체가 통계자료 또는 일반적인 정보 취합 및 공유를 목적으로 한 정보제공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이러한 사업자 단체 또는 제3자를 매개체로 하여 다른 사업자와 정보를 교환하여 담합 관련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협회에 자료제공 시는 당사의 세부적인 전사 전략 등, 예를 들어 수주목표액 및 각 본부 별 금액과 사업지 등 상세정보의 제공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는 향후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위한 자료로 악용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현업팀에서 자료제공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전담팀에 자문을 구하여 확인 후 제공한다.

③ 경쟁사와 Partnering 협력 시 유의사항

- 경쟁입찰 시 사업주의 입찰참여 요구사항 및 입찰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 경쟁사와의 Partnering 협력을 하여 입찰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경쟁사와 Partnering 시 이러한 협력을 통해 입찰경쟁구도에서 경쟁제한적인 목적 및 의도로 Partnering을 통한 제3의 사업자의 입찰 참여 배제, 입찰패키지 분할 합의, 입찰불참 후 타 사업 시 Partnering을 통한 보상 등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한다면 담합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1.3 문서작성 및 자료보존 원칙

① 담합오인 문구 및 문서 작성금지

- 현업에서 업무문서 작성 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의 오인을 할 수 있는 문구 및 문서작성을 일체 하지 않는다.
 - (예시) 시장지배력 강화, 경쟁사 사전배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 경쟁구도 완화를 통한 입찰 성공을 향상 도모, 경쟁사가 수행실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입찰대응 등
- 경쟁사업자의 가격 또는 계획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추후 이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② 담합오인 문구 및 문서 사전 모니터링

- 각팀 CP담당자 및 보직자, 담당, 임원은 현업에서 작성된 문서 중 담합 오인문구가 있는지 자료 공유 및 배포 전 사전 리뷰하고, 오인문구 발견 시 작성자에게 작성사유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을 요청한다. 판단이 어려운 문서인 경우에는 CP담당부서에 문의한다.

③ 독자적 의사결정 자료 보존

- 현업에서 업무수행 시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판단하고 입찰참여를 결정한 의사 결정자료를 보존하여 향후 담합의 추정 시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1.4 담합 금지 가이드라인 10

- “DL그룹은 경쟁사 및 협력사 등과 입찰, 모임, 면담, 정보교환행위 시 **담합금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구분	키워드	가이드라인 10	
경쟁사 모임 및 정보교환 금지	모임참가 금지	1	경쟁사와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경쟁상 민감하지 않은 일반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다.
	담합논의 불참	2	업무협의 중 담합 제안 등이 있는 경우, 협의 중단/불참/탈퇴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 CP담당부서에 보고한다.
	정보교환 금지	3	경쟁상 민감한 정보 또는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ex. 가격, 관심공구, 기타 입찰관련 정보 등, 협회 등 제3자를 통한 교환도 금지)
입찰담합 금지	입찰가격 결정 금지	4	입찰 최저가, 최고가, 수주 예정가, 이와 비슷한 가격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수주수량/비율 등 결정 금지	5	경쟁사 등과 입찰에 관한 발주 수량, 비율 등을 협의 또는 결정하지 않는다.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금지	6	특정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지정하여 협력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지 않는다.
	수의계약 협조금지	7	수의계약 유도 위한 높은 가격으로 입찰 유찰, 들러리 입찰, 입찰 방해에 협조하지 않는다.
문서작성 및 자료보존	담합오인자료 생성 금지 및 독자적 의사결정 자료 보존	8	담합오인/문구 자료를 일체 작성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계자율조정”, “비경쟁”, “B설계” 등 담합오인 문구 표현 금지 입찰 예측, 참여공구 등 불가피하게 작성시 정보 출처를 반드시 밝힐 것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 및 입찰참여 결정한 내용의 문서 보존
내부점검	담당임원/팀장의 책임	9	해당부서 임원/팀장은 실질적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담합의 오인이 없도록 관리한다.
	신고의무	10	회사는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며, 담합 사실을 알고 있는 임직원은 CP담당자에게 신고한다.

2.1.5 정보교환 담합예방 가이드라인 7

- “DL그룹은 경쟁사 및 협력사 등과 정보교환행위 시 **정보교환 담합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1. 교환 금지	경쟁사와의 민감한 정보의 교환은 금지한다.
2. 최소한의 정보 교환	민감한 정보 이외의 정보도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교환한다.
3. 거부의사표시	정보교환 요구에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4. 제3자를 통한 교환금지	제3자(사업자단체, 협력사, 설계사, 유통업자, 시장조사기관, 언론사 등)를 통한 교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정보분류 표기	정보출처, 공개 정보임을 표기한다.
6. 보직자 현황 확인	수주·영업관련 관련 조직의 보직자는 정보교환 현황 (입증자료 보존 포함)을 매월 확인한다.
7. 전문가 자문	자체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CP담당부서에 문의한다.






2.1.6 동종사 협력 가이드라인 10

- “DL그룹은 동종사와 교류 및 협력 시 **동종사 교류협력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구분	가능	주의	금지
교류 협력 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 OPEN된 정보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 제공정보, PQ조건, ITB 발급시기, 입찰초청업체 등 ▪ 발주처 협의사항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조건 오류 시정 위한 협의 등 ▪ 입찰과 관련 없는 논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주잔고/실적, 수주목표액 등 ② 영업인원, Target 국가 등 일반정보 ③ 안전시공(부실/하자 방지) 협의 ④ 신공법/신기술 등의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 or 정부기관 포함된 협의시 발주처가 동조한 담합 or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조건에 대한 (경쟁제한적) 협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찰가격 협의 ② 입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는 협의 (산출내역서 교환 등) ③ 저가 투찰 방지 협의 (예정가에 근접한 투찰 등) ④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협조 ⑤ 경쟁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협의 ⑥ 수주 물량을 나누는 협의 ⑦ 참여공구 논의 ⑧ 협의에 의한 입찰/물량 포기 ⑨ 특정 또는 일정 경쟁사 배제 협의
공동도급 구성 (Consortium or J/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도급 구성원간 협의』는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발주처가 공동도급을 요구 (입찰공고/지침 등) ② 지역업체,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③ 실적보완, 중소기업 기술이전 ④ 위험 분산, 시공의 확실성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구별 공동수급체 결성 정보 등의 교환은 담합오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 입찰 예정 건 전반 논의시 희망공구/ 불참정보 등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합을 전제한 공동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합의 수단 또는 대가관계로서 주고 받는 공동도급

2.1.7 부당한 공동행위 Check-List

- Risk 평가결과 부당공동행위 관련 법 위반 가능성 있는 팀으로 지정된 경우,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체크리스트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 자율점검 후 문의 사항 있는 경우 CP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Check -Point	공정위 시각/해석
	 입찰전 독자적으로 사전에 결정한 관련 서류가 있는가? 설계사와 독자적으로 검토한 자료 등	사업적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과정과 절차상 근거 (경쟁근거)
	 입찰전 작성된 참여사 현황 자료에는 정보출처가 표시되어 있는가?	명확한 정보출처 표기 필요 (경쟁근거)
	 상시 정보공유 체계구축 등 경쟁사 조직도, 담당현황, 동종사 모임 현황, 업체 모임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담합과 직접 관련 없는 정보라도 지속적인 의사연락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공동행위를 위한 상시 정보공유 체계 구축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보고서에 경쟁회피, 경쟁해소 등 오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쟁/비경쟁, 완화/심화. B설계(들러리설계), S (sidekick 들러리) ② 공구 중 고딕체로 진하게 표시 (입찰전) ③ 원안/대안 강제 차등 ④ 자율조정, 빅6* 전략적 제휴/전략적 참여 ⑤ 업계간 협의 강화, 협력관계 구축 ⑥ 비경쟁 수주로 전년 대비 4배 실적 상승 등 	보고서에 경쟁회피, 경쟁해소 했던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한 경우 법인 차원의 조직적인 공동행위 실행 및 결재자에 따라 고위임원 가담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구분	Check -Point	공정위 시각 /해석
입찰중	<p>입찰 진행중 참여사의 현황을 작성하거나 정리하였는가? 입찰일 가까울수록 낙찰사 일치 / 낙찰 예정자에 굵은 글씨, 색깔, 동그라미 등 표시</p>	공구 분할 및 공구내 담합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p>수첩, 달력, 트위터, 메신저, 회계 데이터 등에 공동행위(담합) 오인 혐의내용 등을 기재 하였는가?</p> <p>① 업무수첩에 (낙찰사/들러리 등) 오인 혐의내용 기재 ② 입찰 전 경쟁사 모임 내역 기재 (출장비 전표, 출장보고 등)</p>	담합을 위한 모임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p>입찰 진행중 모임 참여 등 오인 행위를 하였는가? 모임에 참석하여 각 사가 원하는 공구 정보 교환을 하였는가?</p> <p>① 정보교환을 통해 각 사별 참여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협의 ② 전화로 들러리 부탁/들러리 대가로 공동수급사업참여 조건을 논의 ③ 관심 공구를 의도적으로 업계에 공유(협회, 신문 등) 하였는가?</p>	합의 등 명시적 직접증거 뿐 아니라 묵시적/암묵적인 양해 등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하는 정황증거도 증거가 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입찰후	<p>품질, 기술특화 등 차별화된 경쟁력 요소가 기술된 자료, 투찰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p>	경쟁 용어를 사용하여야 오해가 없음 (경쟁근거) 특화, 경쟁력, 기술, 품질, 자체 등
	<p>수주 성공/실패 요인 분석서가 있는가? (투찰가 분석 포함)</p>	소송 시 중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경쟁근거)
정보교환 담합 (전화,이메일,SNS 포함)	<p>당사는 경쟁사의 가격, 원가 및 입찰 조건 등 입찰 중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의 민감한 정보를 경쟁사 등과 교환하였는가? 만약, 교환한 경우 중단후, 상대방에 정보교환 중단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근거 남겼는가?</p> <p>① 경쟁사로부터 오픈된 정보 접수 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 ② 정보교환 중단 시, email, SNS, 통화보고 등 중단의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 후 CP담당과 협의한다.</p>	외형상의 일치, 일치에 필요한정보교환이 있는 경우 담합으로 추정됨
협의를 금지	<p>승인 받은 경쟁사와의 모임 또는 면담 중 담합 오인 이슈 논의 시, 참석이탈 선언 후 자리에서 나와 CP담당자에게 보고하였는가? - 예) 입찰가 협의, 공구배분 등</p>	담합을 의도하는 정보 교환과 외형상 일치만으로도 담합추정 가능. 실행하지 않아도 법 위 반성립 묵시적, 암묵적 양해도 담합으로 간주 될 수 있음)

Q&A

Q1. 법 개정 전에는 정보교환이 문제되지 않았는지?

A1. 개정 전에도 "정보교환"은 담합의 유력한 정황증거로 인정되었음.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법원은 정보교환이 있다는 것만으로 담합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간 담합 " 합의 " 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함. 현행 법제 하였다면(합의추정이 되었다면), 대법원의 2014년 생명보험사 예정이율 담합사건1)과 2015년 라면 담합사건2)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1) 16개 생명보험사가 2001~2006년 미래의 예정이율 등 정보를 교환한 이후 예정이율을 낮춘 사건으로 대법원은 "정보교환이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담합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도 "정보교환만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약3653억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

2) 농심·삼양·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4개 라면업체가 2001년부터 10년간 여섯 차례 가격인상을 했는데, 가격 인상률은 매년 업체들 간 소폭 달랐지만, 인상 결과 각사 주력 상품(신라면·삼양라면·진라면·왕라면) 출고가격이 같아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정보교환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자체를 합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처분을 취소한 바 있음.

Q2. 건설업종에서는 특별히 어떤 정보교환에 주의해야 하는지?

A2.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법 제40조 제1항 제9호)이 성립하기 위한 "정보"는 법령에 열거한 "경쟁상 민감정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임.(예시조항이 아닌 열거조항) 따라서, 입찰시 원가, 거래조건 등의 정보가 교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도 건설공사와 관련된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당사는 독자적 담합을 구성하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겠지만, 건설업종에서 주로 문제되는 입찰담합(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정보교환 행위로 담합이 추정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외형상 일치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교환에 주의해야 함.

※ 당사 또는 입찰참여 예정사 어느 하나의 입찰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즉 입찰가를 높이거나 입찰 비용 절감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 입찰가격을 더 낮게 설정할 여력이 있음에도 경쟁사업자와 유사하거나 약간만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할 유인이 생기게 하는 정보(심사지침 IV. 3), 입찰자 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저가출혈을 방지하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다른 합의에 관한 정보의 교환(심사지침 V. 2. 다)까지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실무상 어떤 정보교환이 문제되는지는 교환된 정보가 시장(입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임.

Q&A

Q3. 사업자단체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괜찮은지?

A3. 사업자단체를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심사지침 Ⅲ)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협회 소속회사들 간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 미래의 정보 보다는 과거의 정보, 특정 프로젝트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하여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Q4. 정보교환 합의 추정에 대한 반증(복명) 자료는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A4. 오인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문서를 만들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업자가 합의
추정을 깨기 위한 반대입증(복명)자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는 외형상 일치가 우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자적 의사결정 자료, 주어진 시장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다른 강력한 외부요인에 의해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자료 등이 있음.